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안 별표1 비고 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해당 공사중지 기간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조사주기는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사주기(분기, 반기, 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른”을 “따른 공청회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청회에서”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공청회”를 각각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4항”을 “영 제16조제5항”으로, “공청회 개최”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따른 공청회”를 “따른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청회 개최”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청회 주재자”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4항”을 “영 제40조제5항”으로,

“공청회 개최”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영 제39조제3항”을 “영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 중 “환경상황”을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으로, “한다(분기, 반기, 연)”를 “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 중지 기간(공사 중지일부터 공사 재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당 주기의 잔여기간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 제1항·제3항, 제12조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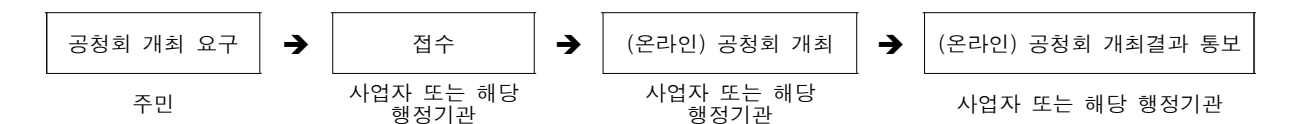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온라인)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 3조제1항에 <u>따른</u> 공청회의 주재 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 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 ----- <u>따른 공청회 또는 법</u> <u>제13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u> -- ----- -----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u>공청회에서</u> 의 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 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 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 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 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공청회 또는 온</u> <u>라인 공청회에서</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u>공청회</u> 의 주재 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 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 ----- <u>공청회 또는 온</u> <u>라인 공청회</u> ----- -----.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u>공청회</u>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u>공청회</u> <u>또는 온라인 공청회</u> -----

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
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
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
----- 따른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② -----

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생략)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
야 한다.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
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
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의 주재자-----

-----.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5항-----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4. (생략) 5. <u>영 제39조제3항</u>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략) 2. <u>문화재</u>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 5. (생략) ② · ③ (생략)	-----.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영 제39조제4항</u>----- ----- -----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